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739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3. 3. 31.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24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20. 1. 27. 금 47,790,000원, 2022. 4. 14.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현재까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C는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2023. 3. 31.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제248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가시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성립 후에 C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C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맺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정

별지